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5. 18 선고 2021가단806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우일

담당변호사 박응석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2. 4. 27.

판 결 선 고 2022. 5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5,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원고는 2017. 4.경부터 C에게 금전을 여러 차례 대여하였다. 이에 대여금이 합계 450,000,000원에 이르자, C은 2018. 12.경 원고에게 ‘피고가 원고로부터 450,000,000원을 차용하였다’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.
 - C은 2020. 7. 14.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)에 관하여 2020. 6. 1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. 피고는 C의 아들이다.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3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C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매각하였고, 이로써 무자력이 되었다.

따라서 위 매각행위는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한다.

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존가치를 일응 5,000만 원으로 보고 피고에게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다.

나. 판단

(1) 우선,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하나, 이 사건 소는 C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

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(2)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므로,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이미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을1,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(3) 원고는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자력이 되었다고 주장하나, 갑4호증의 1 내지 82의 각 기재, 사실조회회신, 금융거래정보회신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원고는 C이 무자력이라고만 주장할 뿐,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가액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,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. 따라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예혁준

별지